

전주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나12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나1227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3245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4. 11. 27.

판결 선고 2025. 1. 8.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3245 판결

주문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선정자 D에게 각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정자 D과 피고 사이의 2009. 6. 24.자, 2009. 11.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선정자 D의 피고에 대한 7,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2021가소1079374'를 '2021가소1079375'로 정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5307 사건(전주지방법원 2014나3576 사건, 대법원 2014다88796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선정자 D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피고의 선정자 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가소56681 사건(전주지방법원 2011나2664 사건, 대법원 2011다75874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각 저촉된다.

나. 판단

1)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5307 사건으로 '피고가 1993. 8. 31. G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입금받은 15,0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22,595,710원 중 일부 청구로써 2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였다가 2014. 4.

1. '피고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전주지방법원 2014나3576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4다88796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5. 3.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1993. 8. 31.경 E조합가 입금한 15,0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67,271,813원 중 일부 청구로써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 소송과 이 사건 청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시적 일부 청구의 기판력은 잔부 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0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5307 사건 등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청구와 중복되지 않음이 금액상 명백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4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선정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소56681 사건으로 '2009. 6. 24.자 대출금 4,000,000원과 2009. 11. 27.자 대출금 3,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여 2011. 2. 24.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선정자가 전주지방법원 2011나2664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1. 9. 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1다75874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1. 12.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312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선행 소송과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피고의 선정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바(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선정자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2023. 3. 30.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선정자 D에 대한 7,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음에도 선정자 D에 대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고연금

판사송인우

판사설민수

별지